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중앙박물관, 국립미술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설치함에 있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(안 제10조제4항 후단 신설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화 실)